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99
------	-----

2009. 7.  
재정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9.6.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경영기획실장 권영규)

#### 가. 제안이유

- 직무발명 관련업무 분장기관 조정(조직담당관 → 창의담당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 부위원장과 간사를 실제 담당부서장으로 교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 부위원장을 정책기획관에서 경영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조직담당관에서 창의담당관으로 변경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 가. 조례의 개요

- 지난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 관련업무의 분장 기관이 조직담당관에서 창의담당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무발명보상심의회 부위원장과 간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운영

- 정부는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명진흥법」(이하 "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 1).

- 법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을 행한 경우 그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승계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0조 및 15조).

- 서울시는 197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여 권리승계, 보상금 지급, 시유특허권의 처분 등 관련 조치들을 행하고 있으며 최근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1>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현황(2008.12 현재)

연 도	승 계	비승계	직무발명 신고현황			
			소 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2006	-	2	2	1	1	-
2007	11	10	21	15	5	1
2008	21	18	39	34	5	-

<표 2> 시유특허권 처분 현황

발 명 특 허 품	처분수입금	사 용 자
미끄럼방지 복공판	17,979,190원	(주)국제금속
빗물받이 받침대	1,145,200원	(주)태풍그레이팅, (주)누리플랜
안정기의 취부구조를 갖는 가로등주 보수용 커버	120,600,000원	(주)대한티엘씨, (주)에이컴조명, 한국전기, 한국전기공업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씰보호부재	15,000,000원	(주)일원테크
계	154,724,390원	-

#### 다. 직무발명 관련 사무분장 조정의 적정성

- 조직담당관은 조직관리 및 시정연구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부서 기능 명확화를 위해서 직무발명 업무를 창의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에서 경영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조직담당관에서 창의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규칙부터 공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절차라 보기 어려움.
- 이미 조직담당관은 6월 10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규칙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후 6월 25일 공포될 예정임.
- 이처럼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이미 하위법령인 규칙의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주의가 요구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참고자료 1>

# 발명진흥법 관련 조항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들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 2007.6.29]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들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들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개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라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조의2는 제3조로 하고, 종전의 제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며, 제3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배제) 이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권리의 시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4조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7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7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 ① 제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장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사항을 제21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3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

우에도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심의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은 경영기획관이,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급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창의 담당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제27조(운영의 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2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발명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